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회사형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내용	업무대행자의 업무종류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업무대행규정 1부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1부 4.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1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